

인권경영 정책

Human Right Management Policy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

ENF Technology Co.,Ltd

1. 인권경영 선언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이하 “ENF”)는 “정도(正道)를 실천하는 ESG경영”의 경영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합니다.

또한 ENF는 이것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권존중의 가치가 전사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등 글로벌 기준을 지지하며, 이를 모든 경영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ENF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급망, 고객, 지역사회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본 정책을 공유하여 인권경영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3. 기본원칙

3.1 인권존중

-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폭력, 모욕, 차별, 괴롭힘등 인권침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 특히 근로자의 생명권, 신체권, 정신적 권리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응합니다.

3.2 강제노동 금지

- 노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신분증 보관, 채무구속, 폭언/위협등 부당한 압박은 금지되며,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은 명확한 설명과 동의를 기반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외 어떠한 금전적비용(채용수수료등)도 부과하지 않으며, 모든 채용과 관련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등 기설물에서 근로자의 출입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3.3 아동노동 금지

-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고용할 경우, 국제 기준 및 각 국가별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 노동연령을 준수합니다.
- 국제기준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금지되며, 18세 미만 연소 임직원을 고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안전 및 보건상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야간 및 초과근로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 연소 임직원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시행합니다.

3.4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인종, 성별, 장애, 종교, 국적, 나이, 결혼여부, 성정체성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교육 기회등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양성과 포용(DE&I)을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장려합니다.

3.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보장된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도 보장됩니다.
-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3.6 근로조건 보호

- 각 국가 및 지역의 법적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지급등을 준수하며, 임금 지급은 명확한 항목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은 법령을 준수하며, 휴식시간 및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 동의 하에만 가능 합니다.

3.7 산업안전 및 보건

- 회사는 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 성실히 이행하며,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 이를 위해 사업장의 시설, 장비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발견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해결합니다.
-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적절한 안전보호구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며, 비상시 대피훈련 실시등 예방을 위한 조치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8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정신적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인권 존중의 직장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 본 조항에 따른 피해자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고충처리채널을 통해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 모든 신고자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금지합니다.

3.9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회사는 공급망 내 주요 협력사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또한 협력사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ESG정책, 협력사행동규범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거래가 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10 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임직원 · 고객 · 협력사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처리하고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암호화, 통제, 정기점검등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11 부패 및 뇌물방지

- 회사는 UN 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반으로써, 모든 형태의 부패 · 뇌물수수 · 횡령 · 사기 · 이해상충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임직원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내규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교육, 내부신고채널, 징계체계를 통해 윤리적 경영환경을 조성합니다.
- 또한 협력사에도 동일한 기준의 청렴 윤리규범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약서에 인권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부패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4. 실행방안

4.1 인권경영 거버넌스

- 회사는 인권경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향후 인권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및 협력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구축과정과 운영상황을 단계적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4.2 인권실사 및 리스크 관리 체계

- 회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권실사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인권리스크 평가 지표 선정
 - 구성원 대상 인권 자가진단 및 설문조사 실시
 - 외부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 및 인터뷰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선조치 실행 및 사후 모니터링

4.3 인권교육

- 회사는 인권경영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교육 및 내부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구성원의 인식제고와 조직문화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전사 인권교육체계 수립 검토
 - 전사 인권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신규입사자, 리더 대상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력사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및 서약체결

4.4 고충처리시스템

- 회사는 인권침해 신고 시, 익명성이 철저히 보호되는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보호조치와 철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조사결과에 따라 즉각적이고 투명한 시정 및 징계조치를 이행하며,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4.5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 공시를 통한 연 1회 이상 공개
- 홈페이지, 보고서등 이해관계자의 접근가능한 경로 제공
- 지역사회, 고객, 투자자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 운영

5.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대표이사 승인하에 매년 검토 및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01일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김 정 수

김정수

제 · 개정 이력